

수업관리 규정

제4장 출결관리

제11조(출결관리) ① 교원은 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수업마다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출결관리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존 출결사항 수정이 필요한 교원은 해당 수업일 후 2주 이내에 관련사항을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25.>

② 학생의 출석 시각에 따른 출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퇴는 시각에 준하여 처리하며, 원격수업의 출결 인정에 관한 사항은 「원격수업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0.9.1. 2021.3.4.>

1. 출석: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
2. 지각: 수업 시작 후 10~30분
3. 결석: 수업 시작 후 30분 이후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학칙시행세칙」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4.>

④ 「학칙」 제21조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기에 등록된 졸업예정자가 소속 학과 및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인턴 또는 취업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업 담당교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 또는 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9.1.>

⑤ 휴강 후 보강 시 출결은 출결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출석점검 방식을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

⑥ 교무처장은 결석 학생을 효과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출결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학과별 장기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해당 교원은 상담결과를 상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25., 2021.3.4.>

제12조(출결관리 준수) ① 출결상황은 학생이 실시간 및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수업 담당교원은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「학칙시행세칙」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의로 출석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9.1.>

③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「학칙」 제33조제5항에 따라 낙제(FA)로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9.1.>

④ 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을 감점하거나 낙제(FA)로 처리할 수 있고, 「학생상벌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3조(출결관리 미준수시 조치) ① 「학칙시행세칙」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임의로 출결을 변경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교원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하며,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9.1.>

② 교원이 학생의 출결을 매 수업 이후 2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,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게 입력을 요청하여야 하며, 요청을 받은 교원은 1주 이내에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2.25.>

③ 교무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이 1주 이내에 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이를 수업기간 미준수로 간주하여 해당교원의 업적평가에 반영한다. <신설 2018.2.25.>

④ 교무처장은 출결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「교원징계규정」 제8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원격수업 운영규정

제8조(출결관리) ① 원격수업의 출결은 주 단위(월요일~일요일)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의 수강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른 출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iClass는 예외로 한다.

1. 출석: 수업 기간 내 90% 이상 수강
2. 지각: 수업 기간 내 50% 이상 90% 미만 수강 또는 수업 기간 후 90% 이상 수강
3. 결석: 그 밖의 경우

[본조개정 2021.3.4.]

제9조(성적평가 및 이수기준) ① 원격수업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「학칙」 및 「학생평가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3.4.>

② 원격수업의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성적평가는 출석을 통한 지필고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 및 프로젝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4.>

③ 원격수업의 출석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성적은 낙제(FA)로 한다. <개정 2021.3.4.>

[조명변경 2021.3.4.]